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차 별 금 지 및 권 리 구 제 등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
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
제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6740호, 2019.12.3. 공포, 2020.12.4.
시행)됨에 따라,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
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등) ①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고용에서의 차별 실태
2. 교육에서의 차별 실태
3.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실태
4. 사법·행정절차, 서비스 제공 및 참정권 행사에서의 차별 실태
5. 모·부성권, 성에서의 차별 실태
6. 가족·가정·복지시설, 건강권에서의 차별 실태
7.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
8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

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관한 전문성·인력·장비를 갖춘 기관·법인·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21년에 실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등) ①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u> <u>1. 고용에서의 차별 실태</u> <u>2. 교육에서의 차별 실태</u> <u>3.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실태</u> <u>4. 사법·행정절차, 서비스 제공 및 참정권 행사에서의 차별 실태</u> <u>5. 모·부성권, 성에서의 차별 실태</u> <u>6. 가족·가정·복지시설, 건강권에서의 차별 실태</u> <u>7.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</u> <u>8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</u>

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에
관한 전문성·인력·장비를 갖
춘 기관·법인·단체에 의뢰하
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
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
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01